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조정·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23조의2는 동법상 조정·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¹⁾²⁾

1)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선정·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변호사

2.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

4.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2) 제22대국회 제43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록 (2026. 5. 20.), 6-7.

- 그런데,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제7항은 동법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조정법」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³⁾ 대법원은 민사조정에 있어서 대립적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사조정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으므로,⁴⁾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서 대표당사자와 대리인에 관한 규율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뿐 아니라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민사조정법」은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표당사자는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조항안의 수락, 대리인의 선임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 ⑥ (생략)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730 결정.

가. 민사조정법 제38조는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만을 열거하여 준용하도록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9조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라고 정한다. 그러나 민사조정법에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일부 조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만으로는 민사조정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8조는 준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과 비송사건절차법만으로는 규율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열거된 민사소송법 조항 외의 다른 조항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다. 민사조정사건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공통점이 있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립구조를 전제로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민사조정절차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대심적 구조의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이러한 점에서 민사조정사건은 상대방을 예정하지 않고 비대심적 구조를 취하는 전형적인 비송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8조).⁵⁾
또한, 「민사조정법」은 분쟁해결 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제87조·제88조), 특별한 수권을 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제90조).⁶⁾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처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법률의 경우 「민사조정법」 등을 직접 준용하거나 또는 복수의 대표당사자, 대표권·대리권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등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과 유사한 내용의 규율을 두고 있음.⁷⁾

5) 「민사조정법」

제18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7) 「소비자기본법」은 대표당사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은 「민사소송법」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 따라서 대표당사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대표당사자와 대리인이 분쟁조정절차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3조의2는,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규정, 「민사조정법」 및 그 밖에 행정기관·공공기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당사자가 수인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선임된 대표당사자·대리인이 선임한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① <u>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u>	제23조의2(대표당사자) ① <u>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u>

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중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건축법」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 ③ (생략)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② <u>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u> ④ <u>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u> <u><신 설></u>	② <u>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u> <u>1. 조정·중재 신청의 철회</u> <u>2. 제25조제6항에 따른 합의</u> <u><삭 제></u> <u><삭 제></u> <u>제23조의3(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u> <u>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u> <u>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u> <u>3.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u> <u>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u>

(전문위원 윤 상 열)